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94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황운하·조 국·김준형

이해민 · 김재원 · 강경숙

김선민 · 신장식 · 정춘생

서왕진 • 박은정 • 차규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동일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법률 제 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			
지 못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4		
를 선고받고 그 <u>유예기간 중</u>	유예기간이 <u>끝</u>		
<u>에 있는</u> 사람	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u>ই</u>		
<u><신 설></u>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u>있는 사람</u>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